

-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-

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552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0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대구를 찾는 국내·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구관광정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
- 나.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,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(재위탁)에 대한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, 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등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사무 기준), 제5조(위탁사무 대상) 등
- 「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9조(관광업무의 위탁 등)

○ 추진 필요성

- 관광산업이 21세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,
- 대구를 방문하는 국·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정보를 제공·홍보하고 여행의 제반편의를 지원하는 등 지역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위탁 대상 사무 :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달서구 공원순환로 46(두류동)
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5,458㎡, 건물 1,713㎡(지하1층, 지상1층)
- 주요시설

시 설 명	면적(㎡)	기 능	구분
관광정보실	223	대구 및 근교권 관광 안내, 외국어통역서비스 등	위탁시설
영 상 실	175	관광홍보영상물 상영, 회의, 세미나 개최 등(102석)	"
외국인음식점	291	단체외국관광객 전문식당	"
커피전문점	178	음료·스낵판매, 관광객 바이어 등과의 상담장	"
사 무 실	93	관리사무실	"
기 타	286	계단, 화장실, 펌프실 등	"
특산품전시판매장	467	목공예, 쉬메릭 등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	비위탁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0. 1. 1. ~ 2022. 12. 31.)

- ※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『두류공원 리뉴얼사업』 과 관련하여 기간 조정 가능
 ⇒ 관련법령 :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20조 제1항 제3호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민간위탁금 355,000천원('19년 기준)
- 산출근거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구분	예산	내 용	
관광정보 센터 운영	계	355		
	인 건 비	240	· 종사자 7명 기본급	161
			· 제수당, 퇴직총당금, 복리후생비	79
	운 영 비	83	· 일반운영비(보험료, 공공요금, 사무용품 등)	58
			· 자산취득비, 시설설치비	21
· 교육훈련비, 행사지원비 등			4	
수수료	32	· 위탁수수료	32	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붙임 1
- 나. 민간위탁 추진계획 : 붙임 2

붙임 1

관련법령

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“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(사무편람)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시장" 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.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·서류 등의 제출요구
2. 관계 공무원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
3.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

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,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8조(위탁계약 체결)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 2.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
 3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 4. 수탁기관의 의무
 5. 관리·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
 6.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
 7.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 8.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
 9.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

제9조(관광업무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관광정보센터 관리·운영
2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붙임 2

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
대구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
대구관광협회에 위탁 운영 중인 대구관광정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('19.12.31.)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~ 제15조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~ 제6조 및 제11조 ~ 제18조
- 「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」 제9조

II 추진배경

- 추진배경 : 대구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(2019.12.31.)
※ 위탁기간 : 2017. 1. 1. ~ 2019. 12. 31.(3년)
- 재위탁 필요성 : 공개모집을 통해 관광서비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을 선정함으로써 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

III 추진방향

- 종류 :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“민간위탁(재위탁)” 추진
※ 재위탁 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
- 방법 : “공개경쟁”을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내실화 도모
- 절차 :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

IV 대구관광정보센터 현황

설치목적

-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여행객에게 종합관광안내서비스 제공
- 21C 신성장 동력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과 외래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

시설현황

- 위 치 : 달서구 공원순환로 46(두류동)
- 개 관 일 : 2000.4.27.(건설비 31억 8,600만원)
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5,458㎡, 건물 1,713㎡(지하1층, 지상1층)

시 설 명	면적(㎡)	기 능	구분
관광정보실	223	대구 및 근교권 관광 안내, 외국어통역서비스 등	위탁시설
영 상 실	175	관광홍보영상물 상영, 회의, 세미나 개최 등(102석)	"
외국인음식점	291	단체외국관광객 전문식당	"
커피전문점	178	음료·스낵판매, 관광객 바이어 등과의 상담장	"
사 무 실	93	관리사무실	"
기 타	286	계단, 화장실, 펌프실 등	"
특산품전시판매장	467	목공예, 쉬메릭 등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	비위탁

V 민간위탁

연혁

- '99.10.30. :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
※ 시의회 제84회 임시회
- '99.12.1. ~ '07.11.30. : 대구시설공단 위탁운영(3회)
- '07.12.1. ~ '19.12.31. : 대구관광협회 위탁운영(5회)

□ 운영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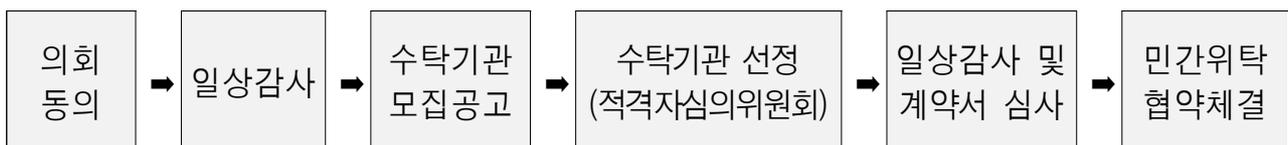
- 운영기간 : 2017. 1. 1. ~ 2019. 12. 31.(3년)
- 운영주체 : 대구광역시 관광협회
 - 운영인력 : 7명(관광안내 4, 사무 2, 기타 1)
 - ※ 관광안내 4(영어 2, 일어 1, 중국어 1)
- 주요업무 :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, 관광정보 수집·관리 및 제공
- '19년 사업비(민간위탁금) : 355백만원(인건비 240, 운영비 83, 수수료 32)
- 관광안내서비스 운영실적

(단위 : 명)

구 분	합 계	내국인	외 국 인					
			소계	일본	중국	미국	유럽	기타
2017년	108,869	96,672	12,197	1,734	1,528	2,741	1,994	4,200
2018년	130,201	121,640	8,561	1,446	1,509	1,827	1,318	2,461
2019. 8월	78,692	73,664	5,028	1,005	1,410	1,129	637	847

VI 위탁개요

- 사 무 명 :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
- 시설위치 : 달서구 두류공원로 46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
 - *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『두류공원 리뉴얼사업』과 관련하여 기간 조정 가능
 - ※관련법령 :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20조 제1항 제3호
- 위탁방법 : 재위탁(공개경쟁)
-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광 서비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위탁절차



- 위탁사무 : 대구관광정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- 위탁비용 : 민간위탁금(2020년 예산안 확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)

< '19년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>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구분	예산	내 용	
관광정보 센터 운영	계	355		
	인 건 비	240	· 종사자 7명 기본급	161
			· 제수당, 퇴직충당금, 복리후생비	79
	운 영 비	83	· 일반운영비(보험료, 공공요금, 사무용품 등)	58
			· 자산취득비, 시설설치비	21
			· 교육훈련비, 행사지원비 등	4
	수수료	32	· 위탁수수료	32

Ⅶ 세부추진계획

1 수탁기관 모집

□ 모집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'19. 10월
 - ※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, 재공고시에도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 준용)
- 공고방법 :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 관광과 관광정책팀(본관 9층)
 - ※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불가

○ 제출서류

- ① 사업계획서(분량제한 없음) 및 사업계획서 요약본(A4, 4매 이내) 각 1부
- ② 대구광역시 사무위탁신청서(붙임2) 1부
- ③ 법인·단체 소개서(연혁, 설립목적, 조직, 사업영역, 자산현황 등) 1부
 - (법인) 등기부등본(법인 인감증명 첨부), 법인정관, 허가증 사본 각 1부
 - (단체) 사업자등록증(최근 1개월 이내), 회칙,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
 - (자산현황) 부동산, 동산, 예금 등 - 증빙서 첨부
- ④ 2018년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각 1부
- ⑤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(A4 10매 이내) 1부
- ⑥ 시설운동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 계획서 1부
- ⑦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, 자체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
- ⑧ 기타 사업계획의 실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

○ 제출방법

- 사무위탁신청서(②)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용지 책자 10부 및 요약본 10부를 제출(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)
- 파일 제출 : 메일(ksmk07@korea.kr) 송부

□ 현장확인 및 설명회

- 공고문으로 같음하며 별도 설명회는 생략

□ 신청자격 및 조건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광서비스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정치·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는 제외
- 선정된 법인은 기존 직원 중 계속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
-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우리시와 수탁단체의 위·수탁협약으로 정함

2 적격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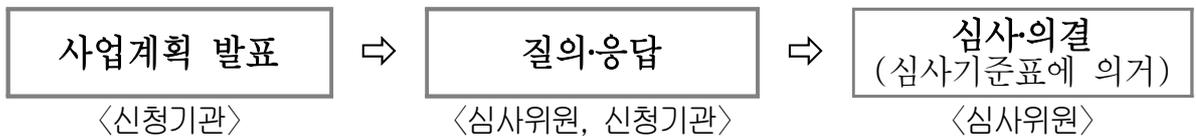
□ **선정방법** :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
□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

- 위원회 구성 : 7명(위원장 포함)
 - 위원장 :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
 - 위 원 : 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
 - 당연직(1명) : 문화체육관광국장
 - 위촉직(6명) : 교수, 관련 전문가 등
- 위원공모
 - 기 간 : '19. 10월
 - 방 법 :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
 - ※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계획 별도 수립

□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- 일 시 : '19. 11월
- 장 소 : 미정 * 개최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확정
- 심사방법 : 서류 및 발표(PT) 평가 후 적격자 선정
 - 다수 공모일 경우 : 심사기준표에 의거 세부항목별 심사
 - 심사위원별 채점, 총점 70점 이상 대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,
 -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자 선정
 - 총점이 70점미만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



- 재공고 후에도 단독공모일 경우 :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『가(可)』인 경우 『적격』 의결로 수탁기관 선정
- 접수기관의 PT발표는 15분 내외

○ 심사기준
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협상에 의한 체결기준)」을 준용, 사무의 성격에 따라 배점 등 조정

심사분야	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
합계			100
사업수행능력 (45)	운영기반	▶ 사업수행의 전문성	15
		▶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	10
		▶ 재무구조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	10
	시설관리 계획	▶ 시설·설비 관리계획의 적정성	10
사업추진 이해도 (35)	목적과 취지	▶ 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	20
	발전전략	▶ 운영 비전의 우수성	15
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(20)	예산집행 계획	▶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▶ 집행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	10
	지역협력 계획	▶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효과성	10

○ 선정발표

-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(1순위) 선정 개별통지
- 소정기일 내 협약 체결하며, 불응 또는 결격 시 차순위자 선정
-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

3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

□ 사업계획 협의

- 적격자 심의 시 언급된 위원회 의견 반영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협의
- 협약 체결 전 일상감사 및 위탁계약서(안) 심사

□ 사업계획 협약 체결

- 협약 체결(계약내용 공증) 및 홈페이지 공개

VIII 추진일정

-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: '19. 10월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일상감사 : '19. 10월
- 수탁기관 모집공고 접수 : '19. 10월
-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: '19. 11월
- 일상감사 및 계약서(안) 심사 : '19. 11월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19. 12월
 - ▶ 위탁 결정사항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, 협약서 공증
- 위·수탁 사무개시 : '20. 1. 1.

※ 업무추진 일정상 지연될 경우 위탁개시 전까지 기존 수탁기관이 사무를 계속하도록 조치

- 붙임 1.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(안)
2. 사무위탁신청서

붙임 1

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 - 호

「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」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(안)

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2조 내지 제15조, 「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거, 「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」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0. .

대 구 광 역 시 장

1. 위탁 개요

가. 위탁사무 :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

나.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까지 (3년간)

- 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『두류공원 리뉴얼사업』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해지 3개월 전 고지

※ 관련법령 :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20조 제1항 제3호

다. 시설규모

시 설 명	위 치	규 모	주 요 시 설 현 황
대구광역시 관광정보센터	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(두류동)	◦대지면적 5,458㎡ ◦건물연면적 1,713㎡ (지하1층, 지상1층)	관광정보실, 영상실, 사무실, 음식점 등
※ 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부속시설은 수탁관리대상 제외			

라. 지원예산 : 센터운영 민간위탁금

- 2020년도 예산안 확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
- 2019년도 운영예산 : 355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등)

※ 비용은 시비 보조를 원칙으로 하나, 미흡한 부분은 수탁법인이 일부 부담가능

2. 위탁조건

- 기존 직원 중 계속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
-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·관리하여야 함(기존 임대차 계약승계)
- 관리·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·수탁협약에 의함

3. 응모자격 및 조건

- 가.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광서비스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나. 정치·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함

4. 현장확인 및 설명회 : 공고문으로 같음하며 별도 설명회는 생략함

5. 신청서 접수

- 가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9. 10월 중
- 나.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 관광과(본관 9층, ☎ 053-803-3886)
- 다. 제출방법 : 방문접수
- 라. 제출서류 * 별첨서식 외에는 서식제한 없음
 - 1) 사업계획서(분량제한 없음) 및 사업계획서 요약본(A4, 4매 이내) 1부
 - 2) 대구광역시 사무위탁신청서 1부(별첨)
 - 3) 법인·단체 소개서(연혁, 설립목적, 조직, 사업영역, 자산현황 등) 1부
 - (법인) 등기부등본(법인 인감증명 첨부), 법인정관, 허가증 사본 각 1부
 - (단체) 사업자등록증(최근 1개월 이내), 회칙,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
 - (자산현황) 부동산, 동산, 예금 등 - 증빙서 첨부
 - 4) 2018년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각 1부
 - 5)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(A4, 10매 이내) 1부
 - 6)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 계획서 1부
 - 7)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, 자체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
 - 8) 기타 사업계획의 실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

※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용지 책자 10부 및 요약본 10부 제본하여 제출 및 파일 송부(ksmk07@korea.kr)

6. 심사평가

- 가. 제안 설명은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PT 설명 후 질의 응답
 나. 발표시간 : 15분 이내

7. 수탁기관 선정 및 발표

- 가. 선정방법 :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·심사
 나. 선정기준

심사분야	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
합계			100
사업수행 능력 (45)	운영기반	▸ 사업수행의 전문성	15
		▸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	10
		▸ 재무구조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	10
	시설관리 계획	▸ 시설·설비 관리계획의 적정성	10
사업추진 이해도 (35)	목적과 취지	▸ 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	20
	발전전략	▸ 운영 비전의 우수성	15
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(20)	예산집행 계획	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▸ 집행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	10
	지역협력 계획	▸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효과성	10

- 다. 응모법인이 없거나 단독 응모하였을 경우 재공고
 라.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다도 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(70점미만)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
 마.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: 개별 통지

8. 기타사항

- 가.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나.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다. 기타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관광과(☎053-803-3886)로 문의 바랍니다.

